

온라인 교과목 운영 규정

2016. 6. 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온라인 교과목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본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 교과목 강의유형) 온라인 교과목은 온라인 강의의 운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콘텐츠와 학습활동이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1. e러닝(e-Learning): 전체 15주 중 12주 이상의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
2. b러닝(Blended Learning): 전체 15주 중 6주 이상 11주 이하의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

제3조(온라인 교과목의 구성) ① 온라인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 시험을 포함하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수방법과 교과목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어렵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e러닝 교과목 콘텐츠는 12주 이상, b러닝 교과목 콘텐츠는 6주 이상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습목표(개요), 학습내용 동영상,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수업관련 활동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방향에 따라 담당교수와 MOOC센터가 협의하여 개발한다.

④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수업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1학점당 매주 50분 이상으로 하며, 이 중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3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온라인 교과목 개발) ①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참여 대학(원)의 신청을 받아 교육혁신단 교수학습개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②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수요, 운영계획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 온라인 교과목 적합성, 교수역량(경험, 지식, 추진의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③ 온라인 교과목 개발은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교과목일 경우에는 교과과정을 신규 설정한 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교과목 개발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교과목 운영 규정

⑤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으로 선정된 경우 제9조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 교과목 개발 지원) ① 개발 승인된 온라인 교과목은 MOOC센터에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② 개발된 콘텐츠를 KOCW에 공개할 경우 본교 규정에 따라 교원종합평가에 교육실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온라인 교과목 개설) ① 온라인 교과목은 참여 대학(원)의 개설 신청을 받아 교무처 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승인 후 개설한다.

② 온라인 교과목 개설은 강의 개발 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티칭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온라인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6학점까지 온라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④ 개발된 온라인 교과목은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제7조(학부 온라인 교과목 개설 지원) ① 학부 온라인 교과목 개설 시 총장은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3학점까지 책임시간수로 인정하며 초과하는 과목은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K-MOOC 교과목은 책임시간으로 추가 인정한다.

② 오프라인 교과목 기준에 준하여 수업조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어강의로 개설 시 영어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 교과목 학사운영) ① 수강신청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온라인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본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 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수강인원, 분반, 폐강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온라인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교과목 강의유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평가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학점인정, 재수강, 성적평가, 강사료 지급 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온라인 교과목 저작권) ①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본교와 공동으로 갖는다.

②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본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수자가 이용할 경우 또는 개발한 교수가 본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와 개발교수 간 상호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강의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온라인 교과목 운영 규정

부칙 <2016. 6. 16.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